

[사 건 명] 행심 2019 - 92

『정보 부분공개 및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 부분공개 및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의 자녀가 ○○학교 학생이고, 피청구인은 ○○학교장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자녀에 대하여 한 선도위원회 징계처분(처분 없음)과 2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 합니다) 조치결과를 통지받고 피청구인에게 선도위원회 및 학폭위 회의록과 사안조사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피청구인은 2019. 5. 31. 학폭위 회의록만 부분공개하고, 학폭위 사안보고서와 선도위원회 회의록 및 사안보고서는 비공개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9. 5. 31.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서,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9. 6. 2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징계당사자인 자녀의 보호자로서, 자녀의 징계에 대한 증거 자료에 대한 공개 청구는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 행사이고, 개인의 권리 구제에 필수적인 절차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선도위원회 회의록과 사안보고서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5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 제9조 제1항 5호에 의거 비공개하였으나, 위 규정들은 전혀 연관성이 없고, 오히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항에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공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및 사안조사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회의가 종료되어 처분이 완료된 이후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개인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공개가 필수적이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회의록만 부분공개 하고, 사안보고서는 일체 비공개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5호와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5항을 유추적용 하여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고, 청구인의 자녀는 선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점도 고려해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나.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3항에 의거하여 학폭위 회의록은 공개 불가하고, 회의록 공개 시에도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 사항은 삭제 후 부분공개이며, 학폭위 사안조사서도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대상이며, 관련학생들의 개인 정보, 발언 내용 누설 시 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도 인정되어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1. 관계법령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5항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2. 판 단

## 가. 선도위원회 회의록 및 사안보고서

청구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5항을 준용, 선도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선도위원회 사안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를 이유로 비공개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선도위원회는 행정적 편의를 위한 자치기구로 초·중등교육법, 정보공개법, 학교생활규정이 적용되는데 초·중등교육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퇴학 조치된 자가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5항 ‘징계위원회 회의는 비공개한다’는 규정을 본 사안에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도위원회 사안보고서나 회의록은 선도위원회가 종료된 후에라도 사안 보고서 내용이나 심의·의결과정에서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당사자나 외부의사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조사나 자유로운 심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정보공개를 통한 알권리 보장이나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청을 다소 후퇴시키더라도 선도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사안보고서나 회의록을 비공개할 필요성이 있고, 본 사건의 경우에 청구인의 자녀가 선도처분을 받지 않아도 권리구제 필요성도 그리 크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학폭위 회의록 및 사안보고서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법정기구이므로, 학교폭력예방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일반법 성격인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데,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재심청구), 제18조(분쟁조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학폭위 회의록 및 사안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고, 제5호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도 해당하며, 본 사안의 경우 공개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여서, 피청구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 사안보고서에 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이는 적법 타당하고,

다만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③ 단서에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피청구인은 위 단서조항에 따라서 학폭위 회의록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만 제외하고 공개결정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 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만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